

의안번호	2216663
의 퇴 인	김한규의원
회 답 일	2026. 4. 2.
추계번호	26C0741

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보수 실태조사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7조)	200	-	-	200	-	400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)	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둬. 다만, 시·군·군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	의무규정
2	안 제7조(실태조사)	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,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, 제4조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조(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)	×	- 직접적인 비용발생 여부와 규모를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7조(실태조사)	○	-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재정수반요인 중 안 제4조(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)와 관련하여서는 성평등가족부와 시·도 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·운영됨에 따라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 내 처우개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, 시·도 내 처우개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설치·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,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, 보수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위 실태조사에 매 3년마다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

으로 추정

- 보건복지부의 “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”의 경우 2023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- 첫 실태조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, 2027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하고,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실태조사 주기(3년)에 맞추어 2번째 실태조사는 2030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청소년지도자 근로여건 등 실태조사를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실태조사 (안 제7조)	200	-	-	200	-	4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